

충남대학교 대학원 독어독문학과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에 관한 시행세칙

[제정 2013. 2.22.]

제1조(목적) 이 시행세칙은 충남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규정(이하 “규정”이라 한다) 제7장 학위청구논문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독어독문학과(이하 “학과”라고 한다)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시행세칙은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석사 및 박사 과정 학생에게 적용한다.

제3조(논문제출자격)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규정 제 41조에서 정한 논문제출자격 시험을 충족하여야 한다.

제4조(논문제출자격시험) ①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시험과목은 각각 3과목 이상 으로 한다.

②자격시험은 전공에 대하여 실시한다.

③출제위원은 전임교수 2인 이상으로 한다.

④출제위원이 채점위원도 겸한다.

⑤전공시험은 각 과목당 100점 만점에 평균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.

⑥불합격된 시험에 대하여는 다음 학기에 다시 응시할 수 있다.

⑦시험의 결과는 5년간 학과에 보관하여야 한다.

제5조(외국어능력기준) ①석사학위논문 제출자는 외국어능력기준으로 독일문화원 B1이상의 합격증을 제출하여야 한다.

②박사학위논문 제출자는 외국어능력기준으로 독일문화원 B1이상의 합격증을 제출하여야 한다.

제6조(학술지게재 의무조건) ①본인이 제1저자인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및 등재 이상의 학술지 논문 1편 이상을 게재하여야 한다.

1. 게재예정증명서(심사에 통과된 경우에 한함)를 제출할 경우 게재된 것으로 간주한다.

2. 학위청구논문 제출일을 포함하여 최근 10개 학기의 실적만 인정한다.

②석사학위과정의 학술지게재 의무조건은 없다.

제7조(논문지도위원회) ①박사학위과정 학생의 논문지도를 위하여 논문지도 위원회를 둔다.

②수료학점의 2분의 1 이상을 취득한 학생의 지도교수는 3인 이상의 위원을 학과 주임교수에게 추천하고, 학과 주임교수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논문지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.

③논문지도위원회의 위원은 관련 분야 전임교수 또는 교외의 해당 전공분야 전문가로 구성한다.

④박사학위과정 학생은 주임교수 주관으로 학위청구논문 제출 예정 1학기 이전에 논문연구계획을 공개 발표하여야 하며, 논문지도위원회의 위원은 이를 심사한다.

제8조(시행세칙의 개정) 시행세칙의 개정이 필요할 때는 학과 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쳐 개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시행세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상기 시행세칙 4조, 5조①, 6조는 2008학년도 입학자부터 소급 적용하고 5조②, 7조는 2015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.